

영등포구의회
제199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7. 3. 3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
專 門 委 員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

1. 경 과

의안 제196호로 2017년 2월 16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
2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이 「부동산 가격
공시에 관한 법률」 및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로
분리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명을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」에서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」로 변경
(안 제명)
- 나.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 (안 제1조, 안 제2조, 안 제6조의2)
- 다. 상위법령 중복 조항 삭제(안 제3조제2항, 안 제4조의2, 안 제6조의3)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근거

-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제25조(시·군·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),
-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3조(위원의 해촉 등),
제74조(시·군·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)

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.

다. 입법예고 (2016. 12. 22. ~ 2017. 1. 11.) : 의견 없음.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 이
분법되어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로 제정됨에 따라,
상위법령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.

○ 주요 내용으로

- 1) “부동산평가위원회”를 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”로 명칭을 변경
- 2) “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”가 도입됨에 따라 「부동산
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에서 정한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사항이
소위원회 심의내용에 추가됨.

- 3) 상위법인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위원의 위촉·해제 및 제척·기피·회피 사항 등의 조항을 삭제함.
-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을 정비·보완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관 련 법 령

■ 『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』

제25조(시·군·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)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으로 시·군·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둔다.

1. [제10조](#)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
 2. [제11조](#)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
 3. [제17조](#)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
 4. [제17조](#)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
 5. [제21조](#)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
 6. [제21조](#)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
 7. 그 밖에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
-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시·군·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[대통령령](#)으로 정한다.

■ 『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』

제73조(위원의 해촉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5. [제72조제1항](#)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

② [법 제24조제4항](#)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.

제74조(시·군·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) ① 시·군·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.

② 시·군·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·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된다. 이 경우 부시장·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2명 이상이면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명하는 부시장·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된다.

③ 시·군·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한다.

1. **부동산 가격공시**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

2. 시민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)에서 추천한 사람

④ 시·군·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[제72조](#) 및 [제73조](#)를 준용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·군·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·군·구의 [조례](#)로 정한다.